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 설치방법

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.운영 중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법 제25조제4항 본문에 따라 아래 내용이 기재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함

- 1. 설치목적 및 장소
- 2. 촬영범위 및 시간
- 3. 관리책임자의 성명 또는 직책 및 연락처
- 4. CCTV 설치 .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, 수탁자의 명칭 및 연락처

< 안내판 설치 사례 >

CCTV 설체 안내문

- 범죄예방과 학생의 안전을 위해 CCTV가 24시간 작동하고 있습니다.
- 촬영범위: 360°회전 100m이내지역
- CCTV운영과 관련된 문의사항은
 OO초등학교 행정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서울 OO초등학교 행정실 00) 0000-0000